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요양급여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 등에 대해서는 환자의 특성과 진료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, 심사업무의 운영 및 개선 등을 위하여 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」 고시의 심사제도운영위원회를 법령에 규정하고자 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1. 17. ~ 3. 18., 7. 11. ~ 8. 22.) 결과,
특기할 사항 없음
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을 달리 적용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에 대하여는 제5조의4에 따른 심사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.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 및 가입자등이 해당 공고의 내용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.

1. 고혈압, 당뇨병 등 지속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의 경우
2. 감염성질환, 수술 등 진료를 위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되는 경우
3. 뇌졸중, 급성심근경색증 등 초기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의료적 중대성이 요구되는 경우

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4(심사제도운영위원회) ① 심사업무의 운영 및 개선 등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심사제도운영위원회는 보건의료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되, 심사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) ①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5조(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</u> <u>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</u> <u>느 하나에 해당되어 요양급여의</u> <u>적용기준 및 방법을 달리 적용</u> <u>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</u> <u>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에 대</u> <u>하여는 제5조의4에 따른 심사제</u> <u>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</u> <u>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</u> <u>준 및 방법의 관한 세부사항을</u> <u>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</u> <u>정하여 공고한다. 이 경우 건강보</u> <u>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 및</u> <u>가입자등이 해당 공고의 내용을</u> <u>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</u> <u>해야한다.</u> <u>1. 고혈압, 당뇨병 등 지속관리가</u> <u>필요한 만성질환의 경우</u> <u>2. 감염성질환, 수술 등 진료를</u> <u>위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이</u> <u>요구되는 경우</u>

<u><신 설></u>	3. 뇌졸중, 급성심근경색증 등 초기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의료적 중대 성이 요구되는 경우 제5조의4(심사제도운영위원회) ① 심사업무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. ② 심사제도운영위원회는 보건의 료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등으로 구성하되, 심사제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장이 정한다.
---	--